

지방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이의 잘못이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'수정신고', '경정청구'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. 또한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'기한 후 신고'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.

수정신고(지방세기본법 제49조)

◦ 의미

-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이를 '수정신고'라 함

◦ 요건

-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
 -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
 -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
 -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

◦ 효과

- 적법·유효한 수정신고가 있으면 수정신고 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되며,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됨. 다만,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음

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	6개월 이내 수정신고	비 고
• 1개월 이내: 90% • 1개월 초과~3개월 이내: 75% • 3개월 초과~6개월 이내: 50% • 6개월 초과~1년 이내: 30% • 1년초과~1년6개월 이내: 20% • 1년 6개월 초과~2년 이내: 10%	• 1개월 이내: 50% • 1개월 초과~3개월 이내: 30% • 3개월 초과~6개월 이내: 20%	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: 50% •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: 50%

경정청구(지방세기본법 제50조)

○ 의미

-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, 이를 '경정청구'라 함

○ 요건

-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
 -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(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)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
 -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 (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)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

○ 효과

-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·경정하거나 결정·

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함. 다만,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 또는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

기한 후 신고(지방세기본법 제51조)

○ 의미 및 요건

-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이를 ‘기한 후 신고’라 함.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

○ 효과

- 기한 후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한 후 신고 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,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(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)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신고 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비로소 그 때 세액이 확정됨.
-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 제도 실시

| 수정신고·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비교 |

구분(효과)	수정신고	경정청구	기한 후 신고
세액의 확정력	○	×	×
가산세의 감면	• 1개월 이내: 90% 감면 • 2개월~3개월 이내: 75% 감면 • 3개월~6개월: 50% 감면 • 6개월~1년 이내: 30% 감면 • 1년~1년6개월 이내: 20% 감면 • 1년6개월~2년 이내: 10% 감면	-	• 2개월~3개월 이내: 30% 감면 • 4개월~6개월 이내: 20% 감면

지방세 개관
지방세 세목별 주요내용
유용한 세금정보
종과세와 비과세·감면제도